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9월 16일  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돌봄을 필요로 하는 금천구민에게 돌봄·보건의료·요양·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통합돌봄의 대상(안 제4조)
-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- 통합돌봄 지원업무 (안 제6조)
- 통합돌봄 제공기관 지정(안 제7조)
- 예산지원(안 제8조)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(안 제9조)

- 통합돌봄 사례회의(안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, 보건·의료, 요양, 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2) 주요내용

- 조례상의 정의(안 제2조)  
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통합돌봄의 정의는 보건복지부 ‘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’ 로드맵과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(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)을 인용하여 규정함.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  
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수립,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-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  
통합돌봄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통합돌봄 지원업무 (안 제6조)
- 통합돌봄 제공기관 지정(안 제7조)  
통합 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 수행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(안 제9조)  
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 사항으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

할 수 있도록 규정함

#### 다. 검토의견

-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전국에 통합돌봄사업을 보급할 계획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의 단독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거·보건의료·요양·돌봄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서비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